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대 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111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과 같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매장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안 별표1제1호나목)

- 1)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보다 자진시정 유도를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음
- 2)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3)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타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 1)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
- 2)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정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PC·모바일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4. ~ 6. 1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상품대금”을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쇼핑몰업자(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를 “온라인쇼핑몰업자(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으로, “상품판매대금을”을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로,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된”을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수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 2) 다수의 납품업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3)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 4)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 ----- ----- -----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u>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u>	3. <u>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 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u>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u> 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5. ----- ----- ----- ----- ----- ----- -- <u>대규모유통업자에게</u>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u>인터넷쇼핑몰업자</u>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	③ ----- ----- <u>온라인쇼핑몰업자</u>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

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제8 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 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 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4. <u>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어음으로 <u>상품판매 대금</u>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 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을 포함한다) 및 <u>상품판매대 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u></u> 5. <u>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한 이자의 지급내역</u> 6. ~ 14. (생 략)	-----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서류의 보존)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 금----- <u>상품판매대 금 또는 상품대금을</u> ----- ----- <u>상품판매대 금 또는 상품대금에서 공제하 거나 추가로 수취한</u> ----- -----</u> 5. <u>법 제8조제3항</u>----- ----- 6. ~ 1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949